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39호 2024. 4. 15.(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12호(인천광역시연수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폐지규정 (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14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부의안건 공고(추가)) 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2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629호(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대상업소 모집(기간연장) 공고) 39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8.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가. 「인천광역시연수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2. 폐지이유

가. 본 규정(훈령)은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의 근거로써 제정되었으나, 규정의 상당 부분을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사무소 및 자격요건 등 이를 제한하는 근거가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규제하여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연수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을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차량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1층 차량민원과
- 연락처 : 전화 032-749-8793, FAX 749-8789
- E-mail : wotjq0312@korea.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연수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 붙임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제정) 2001.10.12 훈령 제127호

(일부개정) 2015.12.29 훈령 제26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거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이하“견인”이라 한다)를 수행할 견인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구역) ①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구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연수구”라 한다)내에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행업체의 수) 대행업체의 수는 연수구에 1개업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대행업체의 선정) 대행업체는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희망업자 모집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법 제36조에 따라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9>

1. <삭제 2015.12.29>

2. 연수구 지역 내 주차대수 4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확보
다만, 부지확보 등 곤란한 경우 인접 구·군에 설치<개정 2015.12.29>

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

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

②제1항 제2호의 주차시설(이하“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
잡종지이고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설치 가능

2. 바닥은 반드시 포장하여야 하고 4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 설치
(주차1면 2.3m×5m 백색으로 설치)

3. 진·출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가능토록 설치

③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3호에 의거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2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직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⑤제1항 제3호의 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 전화기, 무전기 1대 이상

2. 견인차 - 차량당 무전기 1대

3. 대행업소- 무선기지국 설치

⑥제1항 제4호의 필요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차량 -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이상

2. 견인차량보관소 - 사무실 종사 사무원 2명 이상

3. 견인차량보관소 - 경비원 1명 이상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운영<개정 2015.12.29>

⑦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로 본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토지대장 1통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⑧대행업체에서 견인차량보관소로 타인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임대차계약용)
3. 임대차계약서 1통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7조(대행업 지정조건)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1.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조례 등 준수
2.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및 대행업무처리지침 준수
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타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
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통일된 단정한 복장 착용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구청장 지시 준수

제8조(대행업무의 범위) ①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에 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 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한다.

제9조(대행업체 사용인감) ①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대행업체의 견인대행구역 내 또는 인접 구·군에 두어야 한다.<개정 2015.12.29>

제11조(견인·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견인이동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보관·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 등에 알려져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이동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훼손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④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피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견인중에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 하기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할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인일시 및 위반장소
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
3. 보관장소 및 취급자

⑦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하여는 반환시까지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사용자등”이라 한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의 사용자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관일시 및 위반장소

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

3. 보관장소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⑩대행업체는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등이 당해 차량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⑪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등으로부터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과 사용자등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당해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⑫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반환사실을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①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견인차량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13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①제11조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에서 사용자등에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은 인천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소요비용은 매월 2회 대행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급한다.

1. 1회분 : 매월 1일 ~ 15일까지 견인·보관분(20일까지 청구)

2. 2회분 : 매월 16일 ~ 말일까지 견인·보관분(익월 5일까지 청구)

제14(사업개선명령) ①구청장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원활한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대행업체 양도·양수 제한) 최초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구청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6조(대행업체 지정취소등) ①구청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를 거부한 경우
2.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대행업에 관한 시 및 구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
4. 관할구청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대행업체 등을 양도한 경우
5. 기타 대행업 지정시 부여한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대행업 지정의 취소 또는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등) ①구청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견인대행 계획변경) ①구청장은 대행업체수의 변경, 기타 원활한 견인대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계획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행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타관계법령과의 관계) 대행업체는 견인대행업과 관련하여 타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 해석)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구청과 대행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01.10.12 훈령 제12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이규정 시행으로 최초로 대행하는 견인대행 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5.12.29 훈령 제264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행업 지정취소 · 정지등의 기준 (제16조제3항 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제16조제1항 사항	경고	정지 1월	정지 3월	정지 6월	지정취소

[별지 제1호서식]

주차위반차량 견인이동 처리대장

일련 번호	주차위반단속			주차위반차량			견인이동 · 보관		
	단속일	단속 기관	단속 장소	차량등록 번호	차종 (차명)	증거 번호	현장 이동일시	보관소 도착일시	이동거리
									km
									km
									km
									km
									km
									km
									km
									km
									km
									km

피견인차량 반환 청구			소요비용 징수 현황 ※ 필요시 과태료 추가 가능					확인	비고
반 환 청구일시	청구자 (자격)	인수증 번호	계	견 인 료			보관료		
				소 계	기본요금	추가요금			

※ B4(횡)으로 작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부의안건 공고(추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4. 4. 8.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 정비

3. 주요내용

-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 주민자치위원 모집 시 추천제도 관련 조문 및 서식 삭제
 - 관련 조례 기개정에 따름
- 별지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 자치행정과(☎749-7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자치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749-7222, FAX 749-7219
- E - mail : new84@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다”를 각각 “공개모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 또는 제2호의 추천서”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 제11조제2항”을 “조례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추첨위원회”를 “위원선정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6조제2항”을 “조례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16조제3항”을 “조례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조례 제18조”를 “조례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례 제18조제4항”을 “조례 제21조 단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례 제18조제6항”을 “조례 제1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례 제18조제5항”을 “조례 제16조제5항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조례 제17조제4항”을 “조례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조례 제19조”를 “조례 제14조”로, “소집하며”를 “개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조례 제18조제6항”을 “조례 제14조제3항”으로 한

다.

제13조제5항 중 “조례 제26조제2항”을 “조례 제28조제2항”으로, “회장”을 “협의회장”으로, “인정되거나”를 “인정하거나”로,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개의 하고”를 “개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회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사무국장은 협의회 회의시”를 “사무처장은 협의회 회의 시”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6조제4항”을 “조례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직원 :)
3. 모집인원 : ○○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한 차례만 연임가능)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7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합니다.
7. 문의사항 : ○○동 행정복지센터(☎)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장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직업, 소속단체,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직장 및 소속단체의 소재지	모집신청 자격확인, 사업추진 시 공지사항 전달, 통계자료 작성	수집일로부터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민자치위원 및 분과원으로 위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인천광역시 등 행정기관	통계자료 수집 및 작성, 지원사업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연구 기초 자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폰번호), 직업, 소속단체,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직장 및 소속단체의 소재지	수집일로부터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민자치위원 및 분과원으로 위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장 귀하

주민자치위원 자격 여부

주민자치위원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모집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 ○ ○

귀하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 ○○. ~ ○○○○. ○○. ○○.】

○○○○ 년 ○○ 월 ○○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별지 제8호 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동]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업장 주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번호)	위·해촉 사항			비고 (직업)
						위촉 일자	해촉 일자	해촉 사유	

※ 작성요령

1. 서식은 A4용지 횡으로 작성
2. 주소란의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입
3. 비고란은 필히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입

<별지 제9호 서식>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 황

- 주민자치회의 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주민자치회
- 주민자치회장(성명) :
- 위원구성 : 명 (남 명, 여 명)

□ 위원 인적사항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직업	위촉일자	임 기 만료일자	비고
1	회 장						
2	부회장						
3	사무국장						
4	감 사						
5	위 원						
6	위 원						
7	위 원						
8	위 원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장(직인)

<별지 제10호 서식>

공고 제 호

○○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감사결과

건 명			
분 야	운영, 회계	기 간	
범 위			
지적사항	1. 2. 3. 4. 5.		
권고사항	1. 2. 3.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주민자치회장 (인)			

<별지 제12호 서식>

회의록

사무국장	주민자치회장

회의명	○○동 주민자치회(정기회, 임시회)
일시	
장소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인원 : 명 ○ 참석인원 : 명 ○ 불참인원 : 명
회의진행순서 <i>예) 개회 ⇨ 국민의례 ⇨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 폐회</i>	
심의안건 1. 2. 3.	
발언내용(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인 경우 별첨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 발언자성명(직위) -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사항 - 안건 0에 대하여 000 결정함. ○ 표결내용 - 안건 0에 대하여 000와 같이 표결함. 	
비고	별첨 1. 참석부 및 심의 의결서 2.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참고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주민자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장 소			
의 결 사 항							
심 의 내 용							
[참석위원] ○○ 명 참석 /(찬성: 명, 반대: 명, 기권: 명, 무효: 명)							
직 책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가/부)	직 책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가/부)
회 장				위 원			
부회장				"			
감 사				"			
사무국장				"			
위 원				"			
"				"			
"				"			
"				"			
"				"			
"				"			
"				"			
"				"			
"				"			

주민총회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 주민총회 참석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및 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 방법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서명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서명	주민총회 참석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확인, 통계 자료 수집	신청일로부터 만 1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동 주민총회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17호 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결 재		일 자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건 명	날 인 건 수	날 인 요 구 자		
사무 국장	회 장							직 위	성 명	서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민자치위원의 모집)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주민자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자치위원을 <u>추천 또는 공개모집한다.</u></p> <p>② 동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충원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u>추천 또는 공개모집한다.</u></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u> 	<p>제2조(주민자치위원의 모집) ① ----- ----- ----- ----- ----- ----- ----- ----- ----- <u>공개모집한다.</u></p> <p>② ----- ----- ----- ----- ----- ----- ----- ----- ----- <u>공개모집한다.</u></p> <p>③ ----- ----- -----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p><u><삭 제></u></p>

제3조(주민자치위원의 신청 등) ①
동장은 제2조제3항제1호의 신청서
또는 제2호의 추천서와 필요시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임
을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은 별
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임신청서
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자치위원의 관리)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및 예비후보자 선정 명부는 위원추
첨위원회가 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게 제출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감사)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
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
다)이 임명한다.

1. ~ 4. (생략)

제3조(주민자치위원의 신청 등) ① -
----- 신청서-----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20조제2항-----

제5조(주민자치위원의 관리) ① -----

-----위원선정위원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감사) ① 조례 제12조제1항---

1. ~ 4.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18조제5항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 보관한다.

④ (생략)

제9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운영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주민총회)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주민총회는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개최시기 및 방법 등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③ 조례 제16조제5항에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3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주민총회) ① 조례 제14조-----
----- 개최
하며, -----
-----.

② -----

----- 조례
제14조제3항-----

-----.

제13조(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협의회 회의 개최 통지는 회장 명의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 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회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사무국장은 협의회 회의시마다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13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⑨ (생략)

제14조(주민자치협의회 지원)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⑤ 조례 제28조제2항-----
-- 협의회장----- 인정하거나 -----
재적위원-----
-----.

⑥ -----

-- ----- 개 의 하고-----
-----.

⑦ -----
----- 사무처장-----
협의회장-----
-----.

⑧ 사무처장은 협의회 회의 시---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주민자치협의회 지원) 조례 제28조제4항-----

-----.

1. ~ 4. (현행과 같음)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대상업소 모집(기간연장) 공고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영업주들에게 영업소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로 근본적 문제해결 및 영업주 역량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대상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연수구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맞춤형 컨설팅)

나. 사업기간: 2024. 4. 22.(월) ~ 2024. 7. 26.(금) / 3개월

다. 지원대상: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15개소

라. 사업내용: 사전진단 1회, 컨설팅 3회, 만족도 조사 1회

- 경영진단*을 통한 업소별 문제점 발굴 및 해결 방안 제시

*메뉴개발, 배달서비스,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손익관리, 마케팅, 노무·세무 중 희망 컨설팅 분야 선택

- 위생관리 및 위생등급제 컨설팅 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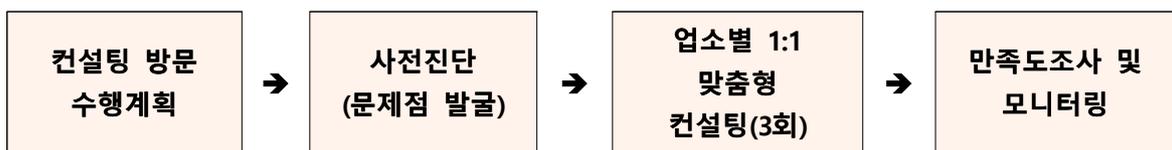
· 위생등급제 기준 업소 위생 현황 점검

· 위생등급제 획득을 위한 업소 개선 방안 컨설팅

· 주방 및 화장실 등 위생등급제 기준의 부착물 제공 및 현장지도

- 전 업소 위생등급제 신청 필수

마. 사업절차



2. 세부추진내용

가. 신청업소 경영진단(1회)

- 진단체크리스트를 통한 점포 환경 및 업주 수요 조사
- 업소 기본현황, 점포 내·외부 시설 환경(주차장, 출입구, 간판, 카운터 등), 업소별 손익분석, 메뉴, 서비스, 홍보방법, 업소 요구도, 영업주 참여의지 등
-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사전 안내
- 맞춤형 컨설팅 방향 설정

나. 맞춤형 1:1 외식경영 컨설팅 지원(2~3회)

- 사전진단 후 수립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업소별·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사전진단 결과에 따른 전문 분야별 컨설턴트 배치
- 컨설팅 내용 : 희망 컨설팅 분야 선택

구분	컨설팅 내용
경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 매출분석 등 손익관리 ○메뉴 원가분석, 식재료 원가절감 등 원가관리, 인건비 관리, 기타비용 관리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 도출
마케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오프라인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도구 활용 등 마케팅 tool 구축 ○포장·브랜드 디자인·간판·점포 리모델링 등 각종 디자인 개발 등
위생·식재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CCP 인증 등 각종 위생인증 정보제공 및 지원 등 ○안전한 식재료 위생관리 및 안정적 식재료 수급관리 등
법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세무·법무 문제 해소를 위한 자문
메뉴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권을 고려한 메뉴 추천 및 추천메뉴 조리방법 전수 ○시그니처 메뉴, 시즌 메뉴 등 메뉴개발 ○포장·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메뉴개발 등 ○현재 운영 메뉴에 대한 경쟁력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메뉴 상품력 강화 방안 : 담음새, 식재활용, 스토리 등

다. 영업주 대상 집체 교육(1회)

구분	교육주제(안)	비고
사업설명(0.15H)	○컨설팅 수행방법 및 업소의 기대효과	
온라인 홍보(1H)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이버 포털 마케팅: 스마트플레이스, 예약설정 방법 등 ○인스타그램 마케팅: 스토리 활용 및 릴스 등 ○리뷰 마케팅: 영수증리뷰, 해시태그 이벤트, 체험단 등 	
친절서비스(1H)	○고객맞이 친절서비스	

라. 컨설팅 수행결과 만족도 조사

3. 신청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3. 22.(금) ~ 4. 17.(수)

나. 접수방법: e-mail (jny0726@korea.kr)

▷ 신청서 등 서식: 연수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http://www.yeonsu.go.kr>)

※ 접수결과 신청업소 미달일 경우, 재공고 예정

4. 자격요건

가. 우선지원

- 區 정책(위생등급제, 우수업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소 우선 선정·지원
-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청년키움식당) 수료 창업자
- 위생관리가 시급한 업소
- 위생관리 및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나. 신청제한

- 24년 타지자체, aT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외식컨설팅을 지원사업 선정업소
- 신청일 기준 현재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인 업소
- 영업신고 후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직영·가맹점)

5. 구비서류

가.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다.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약서 1부<서식3>

라.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대상업소 통보

가. 선정통보: 개별 통지 또는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고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단, 연수구가 요청하는 경우는 추가보완 서류 제출)

나.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다. 문 의 :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담당 (☎032-749-7953)

- 붙임 1.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3.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서약서 1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따라 연수구청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과 컨설팅 수행업체에 귀하의 신청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 사업개시일, 점포 면적, 점포 입지조건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컨설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연수구청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수구청 및 컨설팅 수행업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업정산, 성과평가, 사업정산, 만족도, 성과평가, 관련 연구 등에 활용
- 효율적인 컨설팅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 사업개시일, 점포 면적, 점포 입지조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컨설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연수구청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2024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인)

